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. 8. 18 선고 2023가단22845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3. C

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유봉

피 고 D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3. 8. 18.

주 문

1. 피고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6. 19. 체결된 증여계약을 130,000,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 A, B에게 각 40,000,000원, 원고 C에게 50,000,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가. 피보전권리: 원고들이 E와 F에게 속아 투자한 각 7,000만 원에 관하여 이들이 2018. 11. 30.경 위 각 돈의 반환을 약정한 후 2019. 1. 14. 원고 A, B에게 각 3,000만 원, 원고 C에게 2,000만 원을 각 변제하여, 원고들의 E에 대한 나머지 금액에 관한 손해배상금 또는 약정금(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1. 26. 선고 2022가단5345176 판결, 항소중) 청구권.

나. 사해행위: 무자력 상태인 E가 2018. 6. 19.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.

다. 위 증여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갈음하는 가액배상 청구.

2. 적용 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변론 없이 하는 판결)

판사 염원섭

별지